

용 산 미 군 기 지 내 특 수 보 안 펜 스 설 치 공 사
설 계 서

2022. 07



국토교통부

- 목 차 -

- 1 . 설 계 설 명 서
- 2 . 공 사 시 방 서
- 3 . 과 업 내 용 서
- 4 . 설 계 예 산 서
- 5 . 견 적 서
- 6 .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용산 미군기지 내 특수보안 펜스설치 공사(22년)
2. 위 치 : 용산 미군기지 내 일원
3. 목 적 : 용산미군기지 내 부분반환 부지의 개방을 위한 특수보안 경계펜스 설치

4. 공 사 개 요

1. 펜스설치공사 : 펜스설치(FE-8) H = 2.4m L = 2,686m
출입문(FE-8) H = 2.4m W = 0.2m 2개소
출입문(FE-8) H = 2.4m W = 5.0m 2개소
2. 기타설치공사 : MAN-BARRIER 설치 1*1m 2개소
3. 지장물철거공사 : 1식
4.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2.3TON, 폐아스콘 5.7TON

5. 공사의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이 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현장내 유용토 운반거리 변경 시

마.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었을 때

바. 골재원 변경 시 채취량이 부족하거나 허가과정에서 채취 불가시

사.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자. 기존 지장물 철거와 처리 및 복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7. 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2년 5월 20일(매매기준율 : 1,267.5 W/\$)

나. 유 류 비 : 2022년 5월 20일(무연휘발유 : 1,938W/L, 경유 : 1,826W/L)

다. 시중노임단가 : 2022년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2년 상반기 적용노임

라. 기초자재가격 : 2022. 5월 (① 물가자료 ② 물가정보 ③ 견적)

라. 품 셈 :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8.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

나.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9. 지장물 철거 고철 처리 사항

가. 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은 고재 처리 후 발주금액에서 제할 수 있음.

2. 공 사 시 방 서

공사시방서

1. 총 칙

1-1.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조경 등)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2. 본 공사는 용산미군기지 부지 내에서 작업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사 전반에 대한 미군의 통제와 준공 시 결과물에 대한 미군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제출 및 예정공정

2-1.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미군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미군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부대 출입허가, 시공계획서 및 사용자재 승인 등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

3-1. 감독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3-2.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미군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4-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4-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4-3. 필요시 시설물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5-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종업원이 발주자 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감독원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자재

6-1. 자재는 KS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SLAT(차폐용자재) 등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미군이 요구하는 품질 및 치수 등을 따라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며, 반입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되,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6-4. 공사 중 남은 자재는 향후 보수 등을 위하여 전량 지정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 이행

7-1. 기존 시설 이용 및 마감에 관한 사항

가.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공사로 인하여 공사이외의 부분에 파손이나 오염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파손이나 오염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7-2. 기타

가. 공사 완료 후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기타 특수한 시공사항은 감독원 미군의 지시에 따르며, 재료를 변경할 경우는 미군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친다.

8. 시공검사

8-1. 각 공정은 감독원에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8-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3. 감독원과 별도로 시공 전반에 대한 미군의 검사에 응해야 하며, 미군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4. 공사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 공사 현장 및 안전관리

9-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 중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계약상대자명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9-2.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 등은 관계법령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3. 호우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며,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9-4. 공사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는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 전 충분한 안전교육과 공사 중 철저한 현장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 교육사진 등의 자료는 준공사진대지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작업보고 및 보안관리

10-1.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자료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절대로 금지한다.

10-3. 공사현장 외 기타지역에 출입시 사전 감독원과 미군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사진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 시 사진대지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 착수 전 상황

나. 공사 진행 상황

다. 공사 완성 상황

라.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마.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종

바. 사진촬영 시는 준공 후 검사 불가능개소,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한다.

12 제 법규 준수

12-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2-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13. 공사 일시중지

13-1.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준공검사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사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

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혹은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14-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3. 준공검사는 감독원, 준공검사원, 미군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14-3.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사전에 협의된 미군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4.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측이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폐기물의 처리

계약상대자는 금회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지정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6. 하자관리

16-1. 수급자는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중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의 하자를 보증하여야 한다.

16-2.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증기관에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17-1. 시공단계에 적용하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의 기준 중 국내 법규와 미국측 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은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민원 처리에 대한 소요와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7-3.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 중재 및 소송 등의 기간 중 사업단의 승인 없이 시공업무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4. 이 공사는 미군 기지 내 공사로서 공사 지역의 출입통제권은 주한미군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7-5.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의 출입절차 및 제약사항, 현장관리, 보안조치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7-6.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역의 출입을 위해 기지 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7. 이 공사용지의 주변에는 이미 입주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이 인접하고 있어 공사 시간과 공사용 도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 수행 시 공사용 도로의 사용에 따른 인접 시설물의 거주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의 발생과 공사용 차량 및 근로자 차량으로 인한 주차 및 교통 혼잡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과 업 내 용 서

과업내용서

1. 사업목적

1-1. 용산미군기지 내 부분반환 부지의 개방을 위한 경계펜스 설치

2. 공사개요

2-1. 공 사 명 : 용산공원 반환부지 펜스설치 공사

2-2. 공사현장 : 용산미군기지 내 부분반환 부지

2-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미군 최종 검사 및 보완작업 기간 포함)

2-4. 공사내용

가. 경계용 펜스, 출입문 설치 및 지장물철거, 폐기물 처리

나. 경계용 펜스 및 출입문 설치에 따른 현장복구

※ 펜스, 출입문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미 국방성 펜스설치 기준에 따른 자재를 생산 또는 조달하여 미측 승인을 받은 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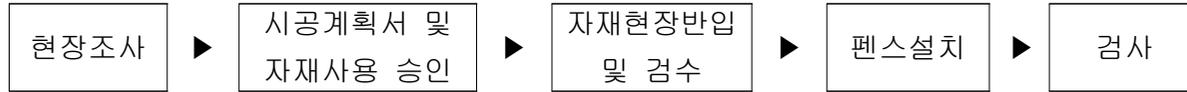
3. 현장통제 : 작업 전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준공시까지 완전히 통제되도록 한다.

※ 용산미군기지 내 공사임에 따라, 미군 및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의 통제에 따라야 함

4. 주변정리 : 공사 전 현장확인(지장물 유무 포함) 및 주변정리(지장물 이전 등)를 시행하고 안전보양을 한다.

5. 공사 일반사항

5-1. 공사절차



5-2. 공사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과 미군에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나. 자재의 규격,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품을 기준으로 하되, 감독원과 미군으로부터 별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재운반 또는 하차 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신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작업 시 도급자의 부주의 및 사전조사 미비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며 인명피해 및 주변 시설물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펜스 설치를 위한 기존 바닥 커팅·깨기 후 발생한 부수물은 부지 내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시 주변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펜스 지주 등의 기초 설치 시 터파기 부분에 다짐을 실시하여 기초 및 지주 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기초 콘크리트의 양생정도를 고려하여 펜스를 설치한다.

사. 펜스 설치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및 미군 등으로부터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 설치위치의 적정성	· 펜스의 수직, 수평 상태
· 펜스, 지주 등의 파손 여부	· 볼트, 너트, 나사 등의 조임 상태
·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 기타 주변 지장물 손상 등

6. 특기 사항

6-1. 미군부대 내 작업을 위해 공사참여자(현장대리인, 시공관리자, 건설노무자)는 미군으로부터 사전 출입허가(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절차 : 출입허가신청서 작성→출입허가 신청(국방부 협조)→승인(미군)

6-2. 시공계획 및 사용자재는 미군측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군측과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6-3. 펜스 설치 공사 구간 내 지장물(수목, 아스팔트, 지하매설물 등)은 펜스와 간섭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철거한다.

6-4. SLAT(차폐용자재) 등은 미군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되, 자재조달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5. 펜스 등 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한 검사는 공사 감독원 및 미군측이 수시로 하며, 모든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일을 미리 정하여 감독원, 미군, 계약상대자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6-6. 계약상대자는 펜스 설치 공사와 관련한 미군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우선 협의하며, 예산이 증감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